
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시·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의2 신설).
-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인·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의3 신설).
-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‘지정섬’ 지역에 관하여,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에 관리·사용하는 선박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지정섬 지역 주민에서 지정섬 지역 방문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지정섬으로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(안 제13조의3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음.
- 국가유산청은 안 제9조의3제1항제4호¹⁾와 관련하여, 해당 허가는

1) 안 제9조의3(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·승인·신고·평가 등(이하 “인·허

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에 따른 영향검토 또는 약식영향진단을
 선행하여야 하는 절차적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
 허가 의제가 가능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
 의견을 제시하였음.

<국가유산청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9조의3(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 · 허가 등의 의제) ① 제9조 의2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·승인·신고·평 가 등(이하 “인·허가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·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분 다.	제9조의3(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 · 허가 등의 의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	4. ----- -----

가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
 해서는 해당 인·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~ 3. (생략)

4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

5. ~ 8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호에 따른 <u>허가</u>	----- <u>허가. 다만, 「국 가유산영향진단법」 제3조제 9호의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 위인지 여부를 진단하거나 같 은 조 제10호에 따른 약식영 향진단을 실시하여 허가대상 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.</u>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(전문위원 최 기 도)